

제 628 호

1977.11.1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192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3

제 1193 호 : 서울특별시 구·출장소토지 등급평가자문

위원회조례 8

제 1194 호 :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관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 10

제 1195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자동차세

농지세및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0

제 1196 호 : 서울특별시협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11

◎ 규 칙

제 1725 호 :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2

◎ 고 시

제 400 호 : 사방지정고시 12

제 401 호 :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2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243

제 40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7
제 40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28
제 40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8
제 405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29
제 406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30

◎ 공 고

제 282 호 :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공고	31
제 283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공람공고	31
제 287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예정지지정공고	32
제 465 호 (성동구공고) : 공인신조개각공고	33
제 1026 호 (도봉구공고) :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33
제 56 호 (은평 출장소공고) : 공인신조개각공고	34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11.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㉞

○ 서울특별시조례제 1192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1 학군은 후기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1개의 공동 학군과 9개의 일반학군을 둔다.

2 학군별 고등학교와 그에 속하는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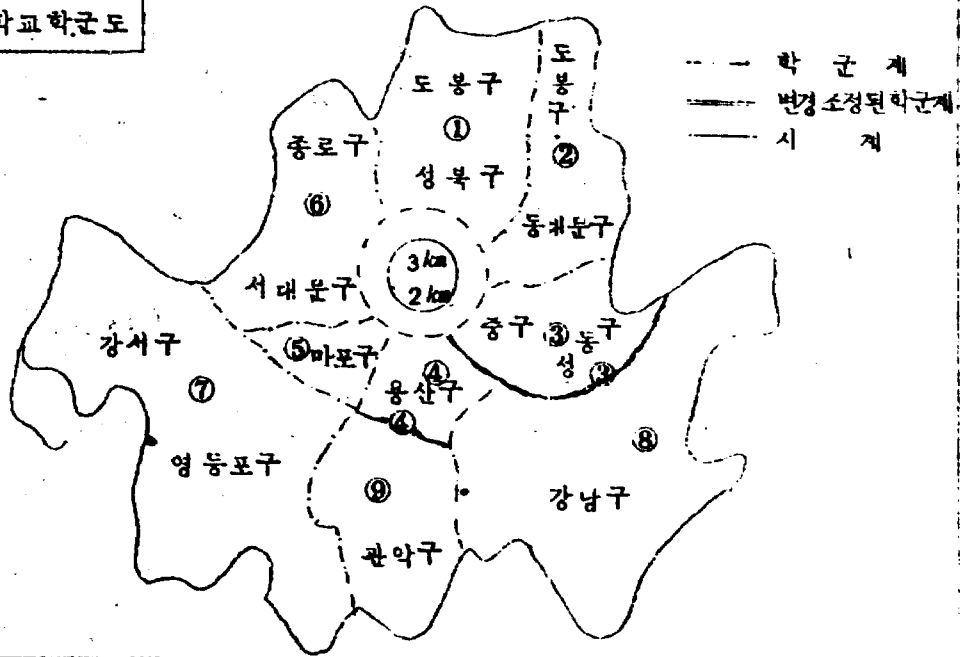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1978 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군별 고등학교와 그에 속하는 중학교일람

고등학교학군도



(1) 학군별 고등학교 및 소속중학교					
학군별	남		자		
	고등학교		소속중학교		
공 동	경 대 배 서 인 중 중	부 신 계 울 창 동 암	서울특별시전체 중 학교	경 계 덕 배 숙 송 이 진 창 중	기 성 성 화 명 의 화 명 덕 문
	(7 교)		(10 교)		
1 학군	고 대 서 신 영 경 홍 경 동 보	려 일 벌 일 훈 동 익 신 성 성	삼선 . 동성 고명 . 보성 용문 . 경신 동대문 . 고려 홍익 . 신일 영문 . 서라벌 영광 . 광운 남대문 . 숭덕 도봉 . 추유	성 성 창 한 상 정 해 정	신 신 사 대 문 성 사 대 부 신 화 의 여
	(10 교)		(18 교)		
			(8 교)		
			(16 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2 학군	경 회 대 광 서울사대부 용 문 경 동 백 명 성 동 동대부고 동 성 (9 교)	대 광 . 성 일 동대문 . 광 신 서울사부 . 경 회 장 안 . 중 화 전 농 . 청 량 휘 경 . 재 현 태 능 . 중 량 (14 교)	경 회 동 덕 서울사대부 휘 경 송 곡 여 혜 원 여 (6 교)	동 덕 . 경 회 정 화 . 면 목 훈 원 . 송 곡 영 란 . 한 성 동대문 . 혜 성 휘 경 . 상 지 전 농 송 인 (14 교)
3 학군	수도사대부 영 동 한 영 경 기 성 동 장 충 경 부 대 원 (8 교)	덕 수 한양 . 광 회 성 동 . 백 명 한영 . 동 북 장 충 . 대 경 수도부 . 성 수 진 국 백 재 . 선 화 (14 교)	무 학 수도사대부 한 양 명 성 진 성 은 광 여 (6 교)	무 학 . 한 양 행 당 . 서울사부 제 성 . 송 의 장 충 . 금 호 수도부 . 성 수 명 성 . 선 화 (12 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4 학군	오 산 상 눈 배 문 용 산 (4 교)	웅 실 . 용 산 선 린 . 신 용 산 단 국 . 오 산 한 강 (7 교)	상 명 성 심 보 성 신 광 수 도 여 (5 교)	신 광 . 용 산 보 성 . 상 명 (4 교)
5 학군	경 성 마 포 광 성 중 문 이 대 부 여 외 도 향 일 란 성 양 정 (9 교)	경 성 . 광 성 웅 문 . 마 포 이 대 부 . 동 도 경 서 . 배 문 향 일 . 양 정 예 원 . 한 성 중 앙 . 중 동 수 중 . 휘 문 대 동 . 수 도 (19 교)	홍 익 대 부 여 금 란 서 울 이 대 부 중 앙 여 (5 교)	중 앙 . 성 경 금 란 . 홍 익 마 포 . 성 산 이 대 부 . 서 울 창 덕 . 예 원 덕 성 . 숙 명 진 명 . 풍 문 (14 교)
6 학군	대 성 명 지 충 암 향 일 양 정 승 실	중 앙 . 중 동 대 동 . 철 운 보 인 . 대 신 서 대 문 . 영 락 대 성 . 연 서 명 지 . 충 암	동 명 명 지 선 일 예 일 성 정 상 명 사 대 부	덕 성 . 숙 명 진 명 . 풍 문 성 정 . 배 화 동 명 . 상 명 부 문 영 . 여 일 정 원 . 선 일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6 교)	인 창 . 불 광 (17 교)	(6 교)	명 지 . 연 회 충 암 (15 교)
7 학 군	관 악 여 의 도 강 서 일 문 일 일 영 일 일 우 신 (6 교)	장 훈 . 영 도 당 산 . 동 일 강 서 . 유 한 공 항 . 여 의 도 화 곡 . 우 신 오 류 (11 교)	영 등 포 서 울 홍 익 대 부 여 동 일 (4 교)	영 등 포 . 봉 영 남 강 . 문 일 동 일 . 강 서 대 릉 . 화 곡 소 류 . 여 의 도 공 항 (11 교)
8 학 군	경 기 영 동 문 위 분 상 분 (4 교)	영 동 . 천 호 동 신 . 휘 분 일 신 . 신 천 (6 교)	진 선 영 파 은 광 (3 교)	영 동 . 천 호 영 파 . 일 신 신 천 . 위 계 진 선 (7 교)
9 학 군	영 등 포 중 앙 대 부 속 성 남 강 훈 우 신 여 의 도 상 문 (6 교)	영 등 포 강 남 상 도 봉 천 신 릉 반 포 상 남 (6 교)	서 문 중 대 부 여 상 경 신 광 (6 교)	강 남 봉 천 상 도 신 릉 중 대 부 방 방 반 포 (6 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남 강 (9 교)	동 양 중 대 부 남 강 (10 교)	(4 교)	(7 교)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 출장소 토지등급평가 자문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구자춘 ㉔ 1977.11.16</p> <p>○ 서울특별시조례 제 119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구, 출장소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 조례</p> <p>제1조 (설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구청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토지등급평가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의 설정 및 수정 2. 조사지역내의 지번간 권형 3. 조사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권형 4. 중앙표준지 (서울특별시 표준지) 와 구표준지간의 지무별 권형 5. 조사지역내의 자료평가의 적부 <p>제3조 (조직) (1)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하되,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 1인을 두고 구청장이 임명한다.</p>				

제4 조 (위원의 임기) ①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타행정구역으로 진출할 때
2. 위원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이 업무수행을 다하지 못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한 행위를 한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결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 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권형사정에 참고토록 한다.

1.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량등급설정및 수정사유
2. 시가및 농지기준수량량 평가등급도
3. 지번변조서

제6 조 (권형사정사진심의) 토지등급의 효율적인 권형사정심을 위하여 사전에 동별로 관할농장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특별심의회로 하여금 조사된 토지등급 및 농지기준수량등급의 지역간 권형유지를 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 조 (회의록)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동로하였을 때에는 권형조사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갈미여백에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 조 (수당과 여비)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토지등급에 관련된 조사 및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설비변상을 할 수 있다.

1. 일당 : 1,500 원
2. 여비 : 3급감류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7년 11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94 호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3 조 제 3 항 단서중 *보수를 하여
도 운행 불가능한 것으로 서울특별
시장이 확인한 것은 *을*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장관의 통보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확인한 경우
에는 *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 이조례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농
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7년 11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95 조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
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
울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 지
방세법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세
마을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소유자동차

2. 농지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농지

3. 사업소세

마을공동경영사업장

제 3 조 (면제신청)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출장소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출장소장) 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7년 11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196 호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제 3 호 내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한 합창과 공연

4. 시민위안을 위한 연주와 공연

5. 종합무대 예술인 가무극의 육성보급과 공연

제 7 조를 제 8 조로 하고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 (부속단체) ① 시립교향악단 내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시립국악관현악단내에 무용단과 가무단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7년 11월 16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25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 조 제 2 항 제 1 호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0 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1977.11.

서울특별시장

사방지정지명세서 (총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	구	동					시	구	동	
	종로		7필	임야	68,0222	4,4307				
	"		3	대지	4,6620	4,6620				
	중구		18	임야	4,5815	4,5815				
	동대문		9	임야	6,7624	6,7624				
	"		2	대지	2,4921	2,4921				
	성동		8	임야	18,4304	13,9229				
	성북		4	"	19,1527	19,1527				
	도봉		31	"	148,6800	148,6800				
	영등포		13	"	67,9805	67,9805				
	관악		59	"	116,7022	116,7022				
	강남		91	"	112,3517	112,351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
(천호)	계	35	토지 임야	20,6809	20,6809				
		240	임야	562,6916	494,5926				
		35	토지 임야	20,6809	20,6809				
		5	대지	7,1611	7,1611				
		280		590,5406	522,4416				
중로	송인	1	대지	2,9620	2,9620				
		1	"	0,0203	0,0203				
	홍지	1	임야	2,4300	0,1800				
		3	"	4,7928	1,2207				
	와용	1	"	1,7706	1,3300				
		1	"	43,8808	0,7000				
	동송	1	"	15,1410	0,4000				
		1	"	1,6727	1,6727				
	삼청	1	대지	72,6912	9,0927	임야	7 필	68,0222	4,2307
		10				대지	3 "	4,6620	4,6620
중구	신당	18	임야	4,5815	4,5815				
		7	"	4,9024	4,9024				
	동대문	2	대지	2,4921	2,4921				
		9		7,4015	7,4015				
	소재	2	임야	1,8600	1,8600				
		11		9,2615	9,2615	임야	9 필	6,7624	
성동	금호4가	2	임야	1,0300	1,0300				
		3	"	7,3523	4,4000	대지	2 필	2,492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성북	용봉	1	임야	3,5312	2,0000				
	현1.2	2	"	6,4929	6,4929				
	계	8		18,4304	13,9229				
	종암	1	임야	11,1907	11,1907				
도봉	상월곡	3	"	7,9620	7,9620				
	계	4		19,1527	19,1527				
	창동	4	임야	7,8000	7,8000				
	월계	5	"	20,2700	20,2700				
영등포	쌍문	8	"	106,6100	106,6100				
	중계	14	"	14,0000	14,0000				
	계	31		148,6800	148,6800				
	시흥	10	임야	59,9605	59,9605				
관악	독산	2	"	6,4400	6,4400				
	온수	1	"	1,5800	1,5800				
	계	13		67,9805	67,9805				
	본동	7	"	2,4525	2,4525				
강남 (천호)	봉천	7	"	15,8924	15,8924				
	방배	5	"	4,3810	4,3810				
	사당	27	"	67,2118	67,2118				
	신림	12	"	26,6315	26,6315				
강남 (천호)	신대방	1	"	0,1120	0,1120				
	계	59 ^필		116,7022	116,7022				
	상일	14	"	5,9200	5,9200				
	"	21	토지 임야	15,5616	15,5616				
강남 (천호)	소계	35		21,4816	21,4816				
	하일	16	임야	15,0400	15,04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명
	교역	22	임야	29,560	29,560				
	"	11	토지 임야	2,1305	2,1305				
	소계	33		31,6905	31,6905				
	명일	4	임야	4,4900	4,4900				
	가락	12	"	14,7700	14,7700				
	방이	8	"	3,7200	3,7200				
	마찬	6	"	16,3500	16,3500				
	적여	7	"	18,9217	18,9217				
	장지	1	"	1,1400	1,1400				
	"	1	토지 임야	2,3126	2,3126				
	소계			3,4526	3,4526				
	문정	1	"	0,2405	0,2405				
	암사	1	임야	2,4400	2,4400				
	"	1	토지 임야	0,4217	0,4217				
	계	126		133,0326	133,0326	임야	91필	112,3517	
						토지	35필	20,6809	
		240	필 임야	494,5926					
합	계	35	토지 임야	20,6809					
		5	대지	7,1611					
		280		522,4416					
중	로송인	580564	대지	2,9620	2,9620				서울특별시
	봉지	224917	"	0,0203	0,0203	서울	종로	봉지	강충남리 7인
	"	산4	임야	2,4300	0,1800				국유
	와봉	산3-9	"	0,8307	0,8307				학교법인성대
	"	산3.25	"	0,6305	0,4600				"
	"	산3.28	"	3,3316	0,5300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명
중구	동승	산 2-10	임야	1,7706	1,3300	서울	중구	충무3가	문교부
	삼청	" 2-1	"	43,8808	0,7000				국유
	행촌	" 1-3	"	15,1410	0,4000				주업선지조
	무악	7-46	대지	1,6727	1,6727				서울특별시
	계	10 필		72,6912	9,0927				임야 7 필 68,0222 4,4307
									대지 3 필 4,6620 4,6620
	금호4가	산 28-1	임야	0,7109	0,7109				시유지
	"	" 28-2	"	0,3121	0,3121				"
	옥수	" 5-99	"	3,9028	1,5000				"
	"	" 6-16	"	1,1813	0,7000				"
	"	" 1-1	"	2,2712	2,2000	"			
	응봉	" 2-1	"	3,5312	2,0000	"			
	금호2가	" 2	"	0,0812	0,0812	"			
	" 1가	" 37	"	6,4117	6,4117	"			
	계	8 필	"	18,4304	13,9229	"			
	신당	산 38	"	0,4800	0,4800	국유			
	"	" 39	"	0,1700	0,1700	"			
	"	" 40	"	0,3315	0,3315	서울 서대문 연희 황도윤			
	"	" 41	"	0,0600	0,0600	국유			
	"	" 42	"	0,2302	0,2302	서울 중 필 3 가 최수자 외 1인			
"	" 43	"	0,1619	0,1619	" 남대문3가 한일은행				
"	" 44	"	0,0929	0,0929	" 서대문 녹번 문봉실				
"	" 45	"	0,1616	0,1616	"				
"	" 46	"	0,0616	0,0616	"				
"	" 47	"	0,0616	0,0616	"				
"	" 48	"	0,1323	0,1323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적면적	소유자또는점유사			
구	동					시	구	동	성명
	신당	산49	임야	0.2514	0.2514	서울	서대문	녹번	문봉실
	"	" 50	"	0.1200	0.1200				국유
	"	" 55	"	0.3400	0.3400	서울	서대문	대현	이파학당
	"	" 57	"	0.5408	0.5408	"	"	"	"
	"	" 58	"	0.3501	0.3501	"	"	"	"
	"	34-5	"	0.5200	0.5200				서울시
	"	34-133	"	0.4806	0.4806		서대문	신촌	성노루
	소계	18필		4.5815	4.5815				
동대문	답십리	산 2-12	임야	2.7024	2.7024	서울	중	장충	김규회
	"	" 2-15	"	0.8300	0.8300				국유
	"	" 2-16	"	0.4200	0.4200				"
	"	" 2-18	"	0.0400	0.0600				서울시
	"	39-7	대지	0.9107	0.9107				국유
	"	49-52	"	1.5814	1.5814				"
	"	산 12-7	임야	0.1000	0.1000	서울	종로	궁정	이춘석
	"	" 12-15	"	0.5902	0.5902	"	"	"	"
	"	" 12-39	"	0.1928	0.1928				국유
	회경	" 6-21	"	0.0800	0.0800	서울	마포	합정	학용회
	"	" 6-35	"	1.7800	1.7800	"	중	양	대한생명
		필 11-9	필임야	6.7624	6.7624				
		(2필대지		2.4921	2.4921				
				9.2515	9.251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적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성북	종암	산2-27	임야	11.1907	11.1907	서울	중구	회현	대한교육보험(주)
		상월곡 1-40	"	0.8500	0.8500	"	종로	창신	학교법인동덕학원
		" 7-4	"	2.5222	2.5222	"	"	"	문화재관리국
	" 8-19	"	4.5828	4.5828	서울	중구	광희	이환원의 1명	
소계		4필		19.1527	19.1527				
도봉	창동	산 177	임야	2.2800	2.2800	서울	영등포	육척	김성일
		" 178	"	0.9700	0.9700	"	도봉	창동	엄사태
		" 187-1	"	4.3000	4.3000	"	종로	효자	유택향의 2인
		" 189-2	"	0.2500	0.2500	경기	양주	구리	안자순의 1인
		월계 4-1	"	1.3900	1.3900	서울	종로	낙원	박원서
		" 4-2	"	2.2900	2.2900	"	"	"	박원서의 19인
		" 4-3	"	0.4500	0.4500	"	"	"	박원서
		" 4-4	"	0.4500	0.4500	"	"	"	"
		" 5	"	15.6900	15.6900	"	중구	명동	경성교구
		쌍문 325-1	"	95.4300	95.4300				천주교회유지재단 국유(산림청)
		" 325-2	"	0.2200	0.2200				국유(산림청)
		" 325-3	"	0.1300	0.1300				"
		" 325-4	"	0.9100	0.9100				"
		" 325-5	"	2.1900	2.1900				"
		" 325-6	"	0.4200	0.4200				"
" 75	"	4.8300	4.8300	경기	안양	안양	육용정의 21인		
" 79	"	2.4800	2.4800	서울	종로	명륜2가	홍순호		
중계 53	"	1.0400	1.0400	"	도봉	중계	이귀남의 3인		
" 57	"	0.4000	0.4000	"	"	"	김순남		
" 59	"	1.7400	1.7400	"	"	"	"		
" 61	"	0.1600	0.1600	"	용산	후암	이승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적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구	동					시	구	동	성명				
도봉	중계	산 70	임야	2.2500	2,2500	서울	도봉	중계	차석준외8인				
		" 87	"	0.1100	0.1100				황기종				
		" 88-1	"	1.7000	1.7000				이동리				
		" 88-2	"	0.3070	0.3000				이종인외1인				
		" 94	"	0.5500	0.5800				조시				
		" 95-1	"	3.9100	3.9100				안계순외1인				
		" 95-2	"	0.6200	0.6200				양점순외2인				
		" 134	"	0.3000	0.3000				이성				
		" 135	"	0.2100	0.2100				"				
		도봉	중계	산 137	임야				0.6800	0.6800	"	동대문	계기
		계 31필											
영등포	시흥	산 137	임야	2.0100	2,0100	서울	중로	대호	국유지				
		" 139-1	"	3.7900	3.7900				교양중과중중				
		" 140-2	"	0.7723	0.7723				국유지				
		" 139-2	"	0.7700	0.7700				"				
		" 1	"	5.2910	5.2910				영등포	문례2가	동신화학		
		" 6-7	"	24.5502	24.5502				"	영등포1가	장규동		
		" 6-5	"	3.3300	3.3300				"	"	"		
		" 24-1	"	0.8700	0.8700				"	문례2가	동신화학		
		" 108-4	"	10.3000	10.3000				"	마포	창진	신성호	
		" 112	"	8.2700	8.2700				"	용산	철파1가	이선근	
		독산	" 202	"	3.1300				3.1300	"	판악	옥석	장정호
		"	" 203	"	3.3100				3.3100	"	중구	신당	이종오
		은수	" 1-2	"	1.5800				1.5800	"	영등포	은수	이종
		계 13필		67.9805	67.9805								
	본	산 3-5	임야	2.0209	2,0209		성북	돈암	김근창				
		" 5-1	"	0.0607	0.0607				국유				
		" 5-3	"	0.0307	0.0307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구	동					시	구	동	성명		
관악	사당	산 84-3	임야	0.4404	0.4404	서울	종로	명동 2 가	이 신 자		
	"	89-1	"	5.6700	5.6700				국 유		
	"	85-1	"	5.2612	5.2612				"		
	"	85-2	"	0.3312	0.3312	서울	종로	명동 2 가	이 신 자		
	"	85-3	"	0.1305	0.1335	경기	성남	분 당	황 용 태		
	"	85-5	"	0.5425	0.5425	서울	용산	분 배	조 권 찬		
	"	86-6	"	3.1900	3.1900	"	관악	사 당	장 재 덕		
	"	91-3	"	7.5500	7.5500				국 유		
	"	93-6	"	1.2121	1.2121				"		
	"	96-1	"	2.1400	2.1400				"		
	"	97-11	"	0.3417	0.3417	서울	관악	사 당	유 지 민		
	"	100-5	"	3.1222	3.1222	"	양동포	대 앙	문 영 희		
	"	102-1	"	0.6319	0.6319				국 유		
	"	102-2	"	0.6100	0.6100				"		
	"	102-3	"	0.6300	0.6300				"		
	"	신림	산 38-1	"	10.6500	10.6500	서울	종로	충 신		왕 만 수
	"	"	58-4	"	7.3700	7.3700	"	"	"		"
	"	"	63-5	"	1.7000	1.7000	"	중구	율지 2 가		한 국 수 렷
	"	"	68-6	"	4.0720	4.0720	"	"	명동 1 가		"
	"	"	63-9	"	0.3310	0.3310	"	성북	보문 4 가		김 석 만 외 42 인
"	"	63-43	"	1.6624	1.6624	"	"	동선 1 가	오 승 계		
"	"	85-4	"	0.0714	0.0714	"	종로	혜 화	백 화 선		
"	"	85-48	"	0.1618	0.1618	"	"	"	"		
"	"	85-49	"	0.1517	0.1517	"	"	"	"		
"	"	85-50	"	0.1618	0.1618	"	"	"	"		
"	"	85-51	"	0.1528	0.1528	"	"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적유자				비고
구	동					시	구	동	성명	
관악	신림	산85-52	임야	0.1116	0.1116	서울	중로	해화동	신화선	
	산대방	150-16	"	0.1120	0.1120	"	관악	신대방	윤성외 39인	
(천호) 강남	계	59평	"	116.7022	116.7022					
	삼일	14-1	"	0.3500	0.3500	서울	강남	상일	조광희	
	"	15-1	"	0.2200	0.2200	"	중구	신림	조중서	
	"	15-2	"	0.5300	0.5300	"	"	"	"	
	"	16-1	"	0.4500	0.4500	"	중로	운니	상한기업	
	"	16-2	"	0.1700	0.1700	"	"	"	"	
	"	16-3	"	0.0800	0.0800	"	성동	화양	소예산업	
	"	16-4	"	0.0600	0.0600	"	강남	상일	김중석	
	"	17-1	"	1.0400	1.0400	"	중로	운이	상한기업	
	"	19	"	0.9000	0.9000	"	강남	상일	김형배	
	"	20-1	"	0.9500	0.9500	"	"	천호	김현광	
	"	20-2	"	0.0100	0.0100	"	"	상일	김석배	
	"	21-1	"	0.3400	0.3400	"	성북	충암	우낙선	
	"	21-2	"	0.1800	0.1800	"	동대문	송인	강호진의 2인	
	"	25	"	0.6400	0.6400	"	중로	운이	이현경	
	"	250-1	토지 임야	1.8100	1.8100	"	용산	석관	송광자의 3인	
	"	137-1	"	2.3321	2.3321	"	성동	성수1가	윤재일	
	"	138	"	2.1904	2.1904	"	서대문	용암	윤인영외 3인	
	"	146	"	0.6000	0.6000	"	중구	필동4가	김은순	
	(천호) 강남	"	344	"	1.6617	1.6617	"	용산	후암	홍건임씨중중
"		325-1	"	0.1205	0.1205	"	서울	"	서울시	
"		325-2	"	0.2126	0.2126	"	"	홍인	오세이	
"		326	"	1.1215	1.1215	"	"	후암	홍건임씨중중	
"	316-2	"	0.0620	0.0620	"	"	둔촌	최연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또는점유자				비고	
구	동					시	구	종	성명		
(원호) 강남	상일	산316-7	토지 임야	0.1000	0.1000	서울	성동	중곡	이원훈		
	"	316-14	"	0.2310	0.2310	"	"	"	"		
	"	316-1	"	1.1620	1.1620	"	동대문	강위	이상숙		
	"	316-5	"	0.3310	0.3310	"	성동	화양	소예산업		
	"	316-6	"	0.4423	0.4423	"	동대문	보문4가	노교환외 3인		
	"	316-13	"	0.3310	0.3310	"	성동	화양	김인규		
	"	313	"	0.4014	0.4014	"	종로	수표	박기형		
	"	321	"	0.2718	0.2718	"	용산	후암	홍건임씨종중		
	"	320-1	"	0.3925	0.3925	"	강남	상일	김중영		
	"	320-3	"	0.2413	0.2413	"	종로	운이	삼한기업		
	"	320-5	"	0.2616	0.2616	"	강남	암사	심홍식의 1인		
	"	175 4-1	"	1.2219	1.2219	"	종로	신문로가	유남산업외 4		
	"	하일	8	임야	6.7700	6.7700	"	서대문	연회	오재택외 4인	
	"	"	9	"	0.5300	0.5300	"	영등포	도림	이중환	
	"	"	10-1	"	0.1600	0.1600	"	강남	하일	신해섭	
	"	"	10-2	"	0.4000	0.4000	"	"	"	"	
	"	"	10-3	"	0.4600	0.4600	"	"	"	"	
	"	"	11-1	"	2.5900	2.5900	"	도봉	쌍문	이승탁	
	"	"	13-1	"	0.2300	0.2300	"	강남	하일	심재명의 4인	
	"	"	13-2	"	0.4900	0.4900	"	서대문	홍제	이인오	
"	"	13-3	"	0.4600	0.4600	"	강남	하일	심재석		
"	"	13-4	"	0.2100	0.2100	"	"	"	"		
"	"	15	"	0.3700	0.3700	"	"	"	김재도		
"	"	16	"	0.5900	0.5900	"	종로	회화	최현상의 1인		
"	"	17	"	0.6800	0.6800	"	강남	하일	심재명의 4인		
"	"	18-2	"	0.0900	0.0900	"	서대문	홍제	이인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비고
구	동					시	구	동	성명			
천보 (강남)	한일산	18-4	임야	0.1100	0.1100	서울	성북	중암	김약현			
	"	19	"	0.9000	0.9000	"	강남	하일	신현섭			
	고덕	80-2	"	2.6800	2.6800	경기	광주	동부	이학춘			
	"	81	"	0.9900	0.9900	서울	성동	마장	김택선			
	"	82	"	1.0400	1.0400	"	강남	고덕	어인선			
	"	83	"	4.7200	4.7200	"			합중이씨중			
	"	87-1	"	0.3200	0.3200	"	종로	창신	이해운			
	"	87-3	"	0.4200	0.4200	"	성동	동소문동	분연순			
	"	87-4	"	0.3400	0.3400	"	종로	창신	이해운			
	"	92	"	0.8400	0.8400	"	성북	동전	장치근			
	"	93-1	"	2.5000	2.5000	"	"	고덕	이동근			
	"	397-1	임야	1.0612	1.0612	"	"	중암	박병호			
	"	397-3		0.1623	0.1623	"	"	동선2가	손용명			
	"	397-4		0.0310	0.0310	"	동북문	전농	정경숙			
	"	397-5		0.0620	0.0620	"	"	"	이현자			
	"	397-6		0.1000	0.1000	"	종로	종로6가	김순희			
	"	397-7		0.1000	0.1000	"	동북문	회거	김용			
	"	397-8		0.1620	0.1620	"	"	"	"			
	"	397-9		0.0620	0.0620	"	영동문	신길	최운수			
	"	397-10		0.1620	0.1620	"	성북	안암1가	진실			
	"	397-11		0.1620	0.1620	"	동북문	전농	김재림			
	"	397-12		0.0310	0.0310	"	성북	안암1가	진성			
	"	88		임야	0.3900	0.3900	"	도봉	미아	오망현		
	"	1	"	0.7000	0.7000	"	송구	입정	오복			
"	171	"	1.1300	1.1300	"	강남	고덕	김안				

소재지	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 고		
							시	구	동		성 명	
(원) 강남			산 11-2	임야	0.0700	0.0700	서울			김 현 봉		
			7-1	"	0.0500	0.0500	"			노 재 형		
			7-2	"	2.7200	2.7200	"					
			고덕	12	"	0.8000	0.8000	"	중 구	주 자	유 지 선	
			"	13-1	"	0.5700	0.5700	"	"	도동 1 가	삼 주 개 발	
			"	13-2	"	0.2700	0.2700	"	"	"	"	
			"	13-3	"	0.2700	0.2700	"	"	"	"	
			"	76	"	4.1900	4.1900	"	성 북	고 덕	현 용 이 씨 공 중	
			"	79	"	4.1600	4.1600	"	"	"	"	
			반이	86	"	0.1900	0.1900	"	서대문	북 아 현	동래전씨중주공파종	
			"	87-1	"	0.8200	0.8200	"	중 구	신 문 로	김 현	
			"	87-2	"	0.5600	0.5600	"	강 남	가 락	광 수 이 씨 공 중	
			"	94-1	"	0.5000	0.5000	"	"	"	전 호 성	
			"	94-2	"	0.1800	0.1800	"	동대문	이 문	정 호 중 외 4 인	
			"	94-3	"	0.0600	0.0600	"	강 남	가 락	전 호 성	
			"	95	"	0.1100	0.1100	"	"	"	권 중 직	
			"	98	"	1.3000	1.3000	"	성 동	구 이	이 중 철	
			마천	1-1	"	10.6400	10.6400	"	중 구	남 산 2 가	김 경 중	
			"	2	"	3.4700	2.5000	"	경 거	이 천 설	면 안 재 숙 외 1 인	
			"	8	"	0.3700	0.3700	"	서 울	강 남 들	촌 구 자 동 외 7 인	
"	13-1	"	2.0300	2.0100	"	"	마 천	구 영 모 외 1 인				
"	12-1	"	0.5100	0.5100	"	영 동 포	당 산	조 운 상				
"	15	"	0.3000	0.3000	"	강 남	마 천	구 영 모 외 1 인				
거여	16	"	1.1400	1.1400	"	중 구	남 대 문	조 흥 은 형				
"	17	"	2.8600	2.8600	"	"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비고
구	동					시	구	동	성명	
서울 강남	거여	산 23-2	임야	2,6400	2,6400	서울	중구	초동	소아마비교육협회	
	"	60-1	"	6,4503	6,4503	"	"	명동	태평산업	
	고덕	48	"	0,3900	0,3900	"	도봉	미아	오방현	
	명일	44	"	1,0800	1,0800	"	"	"	국유림	
	"	45	"	1,7300	1,7300	"	강남	고덕	전주이씨종중	
	"	46-1	"	0,8000	0,8000	"	용산	원효	홍순익	
	"	22	"	0,8800	0,8800	"	중구	장충	은사천	
	가락	42-2	"	0,7600	0,7600	"	강남	반이	최명우외 4인	
	"	48	"	0,6700	0,6700	"	"	가락	한영옥	
	"	50	"	0,3700	0,3700	"	종로	이화	최준원	
	"	60-1	"	0,1800	0,1800	"	동대문	청량	홍필기외 1인	
	"	63	"	4,1700	4,1700	"	서대문	대조	이용준	
	"	73-1	"	1,0000	1,0000	"	"	냉천	이근재	
	"	73-4	"	0,6100	0,6100	경남	진해	중촌	안교일	
	"	73-5	"	0,1700	0,1700	"	"	"	안교일	
	"	73-6	"	0,9700	0,9700	서울	성동	신당	김창석	
	"	73-7	"	0,6600	0,6600	"	종로	명륜	양해자	
	"	75-6	"	1,4100	1,4100	"	성동	송정	김우원	
	"	62-1	"	2,8300	2,8300	"	종로	예시	문창덕	
	거여	62-1	"	0,9714	0,9714	"	중구	"	국유림	
"	71-14	"	3,9300	3,9300	"	용산	효창	양유석		
"	71-17	"	0,9300	0,9300	"	관악	상도	강용덕		
강지	6	"	1,1400	1,1400	경기	용인	기흥	이인숙		
"	76	토지 임야	2,3126	2,3126				국유		
문정	116-1	"	0,2405	0,2405	서울	강남	천호	김은겸		
암사	산 31	임야	2,4400	2,4400	"	종로	청진	김희태		
"	129-2	토지 임야	0,4217	0,4217	"	성북	장위	최희봉		
	126 필			133,63326						

○서울특별시고시제 401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문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권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11.11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설	운동장	영등포구고척동 69 일대	137,000㎡ (41,443명)	

별첨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40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93호 (77.8.23)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제26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7.11.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중구 수자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수자동 가각 정비사업
 3. 사업의 규모 : 폭 : 1-15m
 연장 : 22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
 5. 착수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p>인가 즉시 - 78. 3.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03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가. 도로결정조서</p>	<p>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11. 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10	900m	내곡동 1 - 1902	내곡동산 12-43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404 호</p> <p>도시계획사업 (도시)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 4. 7)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p>	<p>제 25 조와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p>
--	--

3. 관계도서는 원호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강남구 길동--
경기도 광주군--
강남구 상일동
2. 사업의종류및 명칭 : 길동-시계간 도로신설공사
3. 사업규모 : [폭 = 30 m
연장 = 3,743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12.1 ~ 1978.11.31
6. 사용또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사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05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15호 ('77.10.29) 로 일부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건설구청 도시장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1.15.

서울특별시장

가. 공원 일부변경 지적고시 내역

번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	용마공원	성동구, 연북, 중곡, 능동 각 일부	5,146,400	51,977	5,094,42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성동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6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11호 (77.9.5)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공람공고한바 있는 신당계 2구역, 효창 1구역, 아현 2구역에 대하여
-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와 동법 제 65 조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4. 본 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갈음한다.

1977.11.17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수 제 47 0-432

(72-7630)

1977.11.17

수 신

제 목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1.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고 211호 (77.9.5)로 공람한바 있는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이번 고시안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였으며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통지 합니다.
- 2. 분양지 (환지) 지정내역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구획번호	부호	환지면적	권리면적	징수	교부	분양 건물번호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이면참조).

서울특별시 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82 호

하천골재 채취예정지공고
 서울특별시 1977년도·한강 하천골
 재 채취예정지를 하천골재 채취허가
 업무처리지침 제3조 3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77.11. .

서울특별시장

1. 하천명 : 한 강
2. 지 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1의1번지앞
3. 지역위치도 : 생 략
4. 위치도열람 : 관할영등포 구청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8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공람공고

1977.11.12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망우, 김포, 시흥, 신림, 화양추가, 신림추가, 영등추가, 이수,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승인을 신청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고한다.
2.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승인 신청에따른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내역 -

지구명	기간연기할면적	준공예정년월일	연기준공예정년월일	사업시행자	비고
망우지구	1,951,969.7 평	1967.1.21 -1977.12.31	1967.1.21 -1978.12.31	서울특별시장	1년간
김포지구	1,423,560 "	1968.1.23 -	1968.1.23 -1979.12.31	"	2년간
시흥지구	1,736,416 "	1968.1.23 -	1968.1.23 -1979.12.31	"	"
신림지구	1,034,555 "	1970.9. 3 -	1970.9. 3 -1979.12.31	"	"

지구명	기간연기할면적	준공예정년월일	연기준공 예정년월일	사업시행자	비고
화양추가	460,588 평	1972.12.28 -1977.12.31	1972.12.28 -1979.12.31	서울특별시	2년간
신림추가	627,048.3	1972.11.6	1972.11.6 -1979.12.31	"	"
영동추가	530,645 "	1971.12.28	1971.12.28 -1979.12.31	"	"
천호지구	780,000 "	1972.11.6	1972.11.6 -1979.12.31	"	"
이수지구	611,120 "	1972.2.18	1972.2.18 -1978.12.31	이수조합장	1년간

: I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7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52 호 (77.10.17) 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외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외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공고 한다.

2. 환지에 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 사항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11 ,

서울특별시

(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2,890.3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 1의

144의 1 필지

○성동구공고제 46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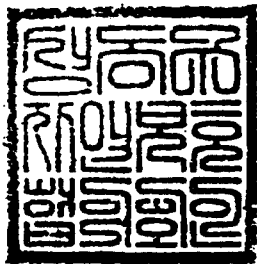
공인신조계각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 자연보호협회의인 (신조)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자연보호협회의인을 (신조)하여 사용토록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7.1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1. 공장명칭 : 서울특별시성동구 자연보호협회의
- 2. 사용일시 : 1977.11.1
- 3. 공인의 인영 : 다음



신조공인인영 (분김수입금출납원의인)




○도봉구공고제 1026 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77.9.1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증설된 당구산하 미아제8동, 번째2동, 창제2동, 수유제5동, 도봉제2동 및 동명칭이 변경된 번째1동, 도봉제1동, 창제1동의 분김수입금출납원 공인을 신조하여 사용토록하고 창동, 번동, 도봉동의 구 분김수입금출납원 인을 폐기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7.11.10

- 1. 신조공인명 : 분김수입금출납원의인
- 2. 사용계시일시 : 77.11.10 09:30
- 3. 신조공인의인영 : 별첨
- 4. 폐기공인명 : 번동, 창동, 도봉동의 분김수입금출납원의인
- 5. 폐기일시 : 1977.8.31 18:00

<p>미아제8동</p> 	<p>수유제5동</p> 	<p>번제1동</p> 
--	--	---

비 계 2 동 	창 계 1 동 	창 계 2 동 
도 봉 계 1 동 	도 봉 계 2 동 	
<p>◎ 은명출장소공고제 56 호 공인신조개각공고</p> <p>다음과 같이 청인을 신조 개각하 연기 이를 공고함.</p> <p>1977.11.11</p> <p>은명출장소장</p> <p>1. 공인명 : 당소자연보호협의회청인</p> <p>2. 사용개시일자 : 77.11.12 09:30</p>		<p>3. 공인의인명 : 다 음</p> <p>은명출장소자연보호협의회인</p> 